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
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창양 (산업통상자원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신규로 구매 또는 임차해야 하는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의 비율을 상향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대기환경개선에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함

2. 주요내용

-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·임차비율 조정(안 제18조의2제1항·제2항)
 -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·임차 의무비율을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 100%(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80%)에서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100%로 조정하고(안 제18조의2제1항),
 - 차량 수급 차질 등으로 당해 연도에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8조의2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2제1항 중 “자동차로”를 “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의 단서는 삭제한다.

제18조의2제2항 중 “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.”를 “하이브리드자동차 등 다른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다.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차량 수급 차질 등으로 당해 연도에 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

제18조의2제3항은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8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)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“공공기관”이라 한다)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(이하 “지방공기업”이라 한다)의 장은 구입 또는 임차(이하 “구매”라 한다)하는 업무용 차량을 모두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해야 한다. 이 경우 연간 구매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100분의 80 이상을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구매해야 하며,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의 장 전용차량은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해당 연도의 신규 구매 자동차를 포함한 업무용 차량 총 보유 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 2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3. 화물을 운송하는 용도의 자동차 등 환경	제18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-----. < 단서 삭제 > ② ----- ----- -----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다른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다. 1.~3. (현행과 같음)

친화적 자동차를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<u>< 제4호 신설 ></u> ③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, 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.	<u>4. 차량 수급 차질 등으로 당해 연도에 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</u> <u>< 삭제 ></u>
-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	
연 락 처	(044) 203 - 4329